

의안번호	2208777
의 퇴 인	김태호의원
회 답 일	2025.5.28.
추 계 번호	25B145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1억 3,400만원, 2030년 14억 8,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68억 1,800만원(연평균 33억 6,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	2,134	4,934	6,534	1,734	1,482	16,818	3,364
국비	400	3,200	4,800	—	—	8,400	1,680
지방비	1,734	1,734	1,734	1,734	1,482	8,418	1,684

주: 1. 국비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에 따른 비용

2. 지방비는 도립·군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에 따른 비용

3.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지난 10년간(2016~2025년)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타당성 검토방법 및 검토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공원관리청은 5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5조제2항 (공원계획의 변경 등)	○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추계
2	안 제15조제3항 (공원계획의 변경 등)	-	환경부에 따르면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준에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추가되어도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공원계획¹⁾ 타당성 검토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추계 방법은 연도별 공원 수에 공원별 타당성 검토 비용 단가를 곱하여 추계
 - 타당성 검토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므로 타당성 검토 비용은 5년마다 반복 지출됨
- 국립·도립·군립공원 지정 수는 최근 10년간 공원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2024년 말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자연공원 지정 수: 국립공원 23개소, 도립공원 30개소, 군립공원 28개소

1)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참고자료] 자연공원 지정 현황 참고

[표 2] 공원지정 현황: 2015~2024년

(단위: 개소)

관리주체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립공원	21	22	22	22	22	22	22	22	23	23
도립공원	30	29	29	29	29	30	30	30	30	30
군립공원	27	27	27	27	27	27	28	28	28	28

자료: 환경부 자연공원과 제출자료

- 타당성 검토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추계기간 동안 각 공원별로 타당성 검토주기가 도래하여 추계 첫해인 2026년부터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함
- 공원별 타당성 검토는 전체 공원 수를 추계기간 동안 균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 이때,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공원별 타당성 검토 비용 단가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한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비용 단가를 참고하였음
 - 추계기간 동안 타당성 검토 비용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가 전체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수행하였고, 조사 비용은 총 84억원이 소요되었음²⁾

○ 제3차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비용: 2018년 4억원, 2019년 32억원, 2020년 48억원

[표 3] 제3차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관련 예산내역: 2018~2020년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합계
소요예산	400	3,200	4,800	8,400
사업내용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마련 연구용역비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사업(I) -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공원 계획 구상 및 전략 - 공원관리 계획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사업(II) - 자연환경 영향평가 - 협의결과 반영 - 보고서 작성 - 사업관리	

자료: 환경부 자연공원과

○ 개정안에 따라 5년마다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게 될 경우,
- 연도별 타당성 검토 비용은 직전 제3차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비용을 준용하여
사업 첫째 4억원, 차년도 32억원, 차차년도 48억원이 소요되며 5년마다 반복 지
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4]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국비)	400	3,200	4,800	-	-	8,400	1,68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제3차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팔공산 국립공원이 지정(2023년 지정) 되기 전인 2020년에 수행 되었으므로 총 22개소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함

□ 도립공원(총 30개소)의 경우 전체 공원 수를 추계기간 동안 균분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군립공원(총 28개소)은 추계기간 첫해부터 4년차까지 연간 6개소, 마지막 해에는 4개소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공원 수

- 도립공원: 연간 6개소 (총 30개소)
- 군립공원: 연간 4~6개소 (총 28개소)

○ 공원별 타당성 검토 비용 단가

- ① 도립공원: 1.63억원/개소
 - 2016~2025년 26개 도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비용 42억 4,000만원의 평균금액
- ② 군립공원: 1.26억원/개소
 - 2016~2025년 20개 군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비용 25억 2,000만원의 평균금액

[표 5] 도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현황(2016~2025년)

(단위: km², 백만원)

연번	구분	면적	타당성 검토		지자체
			검토연도	소요예산	
1	칠갑산	31.1	2016	407	충청남도
2	조계산	26.8	2017	260	전라남도
3	두륜산	32.9	2017		전라남도
4	천관산	7.9	2017		전라남도
5	연인산	37.7	2017	271	경기도
6	벌교갯벌	23.1	2017	21	전라남도
7	대둔산(충남)	24.8	2018	448	충청남도
8	팔공산(경북)	90.2	2018	333	경상북도
9	수리산	7	2018	71	경기도
10	가지산(울산)	30.2	2019	43	울산시
11	고북	1.9	2019	38	세종시
12	신안갯벌	162	2019	72	전라남도
13	무안갯벌	37.1	2019		전라남도
14	불갑산	6.9	2019	52	전라남도
15	팔공산(대구)	35	2020	300	대구시
16	남한산성	35.2	2022	198	경기도
17	모악산	43.3	2024	1,063	전라북도
18	대둔산(전북)	35.2	2024		전라북도
19	마이산	17.2	2024		전라북도
20	선운산	43.7	2024		전라북도
21	경포	1.7	2024	100	강원도

22	가지산(경남)	74.2	2024	107	경상남도
23	연화산	21.8	2024		경상남도
24	금오산	37.3	2025	456	경상북도
25	청량산	49.5	2025		경상북도
26	문경새재	5.5	2025		경상북도
합 계				4,240	

자료: 환경부 자연공원과

[표 6] 군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현황(2016~2025년)

(단위: km², 백만원)

연번	구분	면적	타당성 검토		지자체
			검토연도	소요예산	
1	기백산	2	2016	37	경남 함양군
2	불영계곡	25.6	2017	434	경북 울진군
3	덕구온천	6.3	2017		경북 울진군
4	대이리	3.7	2018	86	강원 삼척시
5	명지산	14	2018	57	경기도 가평군
6	보경사	8.5	2019	106	경북 포항시
7	입곡	1	2019	18	경남 함안군
8	고소성	3	2020	99	경남 하동군
9	웅석봉	18	2020	94	경남 산청군
10	신불산	11.6	2020	56	울산 울주군
11	운문산	16.2	2020	150	경북 청도군
12	아미산	3.2	2020	221	강원 인제군
13	병방산	0.5	2020	60	강원 정선군
14	봉명산	2.6	2021	19	경남 사천시
15	화왕산	31.3	2021	173	경남 창녕군
16	장안산	6.3	2022	62	전북 장수군
17	천마산	12.5	2023	595	경기도 남양주시
18	강천산	15.8	2022	149	전북 순창
19	비슬산	13.4	2024	59	대구 달성군
20	빙계	0.88	2024	47	경북 의성군
합 계				2,522	

자료: 환경부 자연공원과

- 도립·군립공원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비용은 연도별 공원 수에 공원별 타당성 검토비용 단가를 곱하여 추계

[표 7] 도립·군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도립·군립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도립공원	공원 수 (A, 개소)	6	6	6	6	6	—	—
	타당성 검토비용 단가 (B, 백만원/개소)	163	163	163	163	163	—	—
	소계 (C=A×B)	978	978	978	978	978	4,890	978
군립공원	공원 수 (D, 개소)	6	6	6	6	4	—	—
	타당성 검토비용 단가 (E, 백만원/개소)	126	126	126	126	126	—	—
	소계 (F=D×E)	756	756	756	756	504	3,528	706
합 계(지방비)		1,734	1,734	1,734	1,734	1,482	8,418	1,684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1억 3,400만원, 2030년 14억 8,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68억 1,800만원(연평균 33억 6,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		2,134	4,934	6,534	1,734	1,482	16,818	3,364
	국비	400	3,200	4,800	—	—	8,400	1,680
	지방비	1,734	1,734	1,734	1,734	1,482	8,418	1,684

주: 1. 국비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에 따른 비용

2. 지방비는 도립·군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에 따른 비용

3.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지난 10년간(2016~2025년)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타당성 검토방법 및 검토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지난 10년간(2016~2025년)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타당성 검토방법 및 검토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자연공원 지정 현황³⁾

□ 국립공원 지정

(단위: km²)

연번	공원명	위치	공원구역		비고
			지정년월일	면적	
계	23개소			6,888.394	육지: 4,106.019 해면: 2,782.375
1	지리산	전남·북, 경남	'67.12.29	485.647	
2	경주	경북	'68.12.31	137.418	
3	계룡산	충남, 대전	'68.12.31	64.176	
4	한려해상	전남, 경남	'68.12.31	537.479	해면 414.750
5	설악산	강원	'70. 3.24	400.027	
6	속리산	충북, 경북	'70. 3.24	278.921	
7	한라산	제주	'70. 3.24	153.444	
8	내장산	전남·북	'71.11.17	80.138	
9	가야산	경남·북	'72.10.13	76.792	
10	덕유산	전북, 경남	'75. 2. 1	228.919	
11	오대산	강원	'75. 2. 1	327.904	
12	주왕산	경북	'76. 3.30	106.114	
13	태안해안	충남	'78.10.20	388.604	해면 364.788
14	다도해상	전남	'81.12.23	2,276.209	해면 1,985.187
15	북한산	서울, 경기	'83. 4. 2	77.334	
16	치악산	강원	'84.12.31	176.567	
17	월악산	충북, 경북	'84.12.31	288.140	
18	소백산	충북, 경북	'87.12.14	321.264	
19	변산반도	전북	'88. 6.11	154.957	해면 17.650
20	월출산	전남	'88. 6.11	56.526	
21	무등산	광주, 전남	'13. 3. 4	75.721	
22	태백산	강원	'16. 8.22	70.036	
23	팔공산	대구, 경북	'23. 12.31	126.058	

3) 2024년 말 기준, 환경부 자연공원과 제출자료

□ 도립공원 지정

(단위: km²)

연번	공 원 명	위 치(시·군별)	면 적	지정일
계	30개소		1,027.032	
1	금오산	경북 구미, 칠곡, 김천	37.262	'70. 6. 1
2	남한산성	경기 광주, 하남, 성남	35.139	'71. 3.17
3	모악산	전북 김제, 완주, 전주	43.309	'71.12. 2
4	덕산	충남 예산, 서산	19.859	'73. 3. 6
5	칠갑산	충남 청양	31.068	'73. 3. 6
6	대둔산	전북 완주, 충남 논산, 금산	59.996	'77. 3.23
7	마이산	전북 진안	17.220	'79.10.16
8	가지산	울산, 경남 양산, 밀양	104.403	'79.11. 5
9	조계산	전남 순천	26.750	'79.12.26
10	두륜산	전남 해남	32.91	'79.12.26
11	선운산	전북 고창	43.683	'79.12.27
12	문경새재	경북 문경	5.478	'81. 6. 4
13	경포	강원 강릉	1.689	'82. 6.26
14	청량산	경북 봉화, 안동	49.509	'82. 8.21
15	연화산	경남 고성	21.793	'83. 9.29
16	고북	세종특별자치시	1.949	'91. 1.17
17	천관산	전남 장흥	7.94	'98.10.13
18	연인산	경기 가평	37.691	'05. 9.15
19	신안갯벌	전남 신안	162.263	'08. 6.05
20	무안갯벌	전남 무안	37.122	'08. 6.05
21	마라해양	제주도 서귀포시	95.292	'08. 9.19
22	성산일출해양	제주도 서귀포시	19.540	'08. 9.19
23	서귀포해양	제주도 서귀포시	49.755	'08. 9.19
24	추자	제주도 제주시	16.156	'08. 9.19
25	우도해양	제주도 제주시	25.863	'08. 9.19
26	수리산	경기 안양, 안산, 군포	7.035	'09. 7.16
27	제주곶자왓	제주도 서귀포시	1.547	'11.12.30
28	벌교갯벌	전남 보성	23.068	'16. 1.28
29	불갑산	전남 영광	7.004	'19. 1.10
30	철원DMZ성재산	강원 철원	4.739	'23. 7.21

□ 군립공원 지정

(단위: km²)

연번	공 원 명	위 치(시·군별)	면 적	지정일
계	28개소		253.321	
1	강천산	전북 순창군 팔덕면	15.812	'81. 1. 7
2	천마산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진천면, 호평면	12.363	'83. 8.29
3	내연산보경사	경북 포항시 송라면	8.511	'83.10. 1
4	불영계곡	경북 울진군 울진읍, 서면, 근남면	25.595	'83.10. 5
5	덕구온천	경북 울진군 북면	6.275	'83.10. 5
6	상죽암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하이면	5.094	'83.11.10
7	호구산	경남 남해군 이동면	1.657	'83.11.12
8	고소성	경남 하동군 악양면, 화개면	3.035	'83.11.14
9	봉명산	경남 사천시 곤양면, 곤명면	2.645	'83.11.14
10	거열산성	경남 거창군 거창읍, 마리면	3.271	'83.11.17
11	기백산	경남 함양군 안의면	2.013	'83.11.18
12	황매산	경남 함천군 대명면, 가회면	21.784	'83.11.18
13	웅석봉	경남 산청군 산청읍, 금서·삼장·단성	17.960	'83.11.23
14	신불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삼남면	11.690	'83.12. 2
15	운문산	경북 청도군 운문면	16.173	'83.12.29
16	화왕산	경남 창녕군 창녕읍	31.258	'84. 1.11
17	구천계곡	경남 거제시 신현읍, 동부면	5.868	'84. 2. 4
18	입곡	경남 함안군 산인면	0.961	'85. 1.28
19	비슬산	대구 달성군 옥포면, 유가면	13.382	'86. 2.22
20	장안산	전북 장수군 장수읍	6.187	'86. 8.18
21	빙계계곡	경북 의성군 춘산면	0.890	'87. 9.25
22	아미산	강원 인제군 인제읍	3.16	'90. 2.23
23	명지산	경기 가평군 북면	14.024	'91.10. 9
24	방어산	경남 진주시 지수면	2.588	'93.12.16
25	대이리	강원 삼척시 신기면	3.664	'96.10.25
26	월성계곡	경남 거창군 북상면	0.650	'02. 4.25
27	병방산	강원 정선군 정선읍	0.469	'11. 9.30
28	장산	부산 해운대구	16.342	'21. 9.15.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장	김신애
추계세제분석관보	장우윤
연락처	02-6788-3735
	jangwy93@nabo.go.kr
